

무배당 멤버원거치연금보험

하나 HSBC 생명보험(주)

## 확 인 서

무배당 멤버원거치연금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09년    월    일

하나 HSBC 생명보험(주)

선임계리사    김 상 민 (인)

무배당 멤버원거치연금보험  
사업방법서

하나HSBC생명보험(주)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무배당 멤버원거치연금보험

### 1. 보험종목 및 명칭

구 분	연금지급형태	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범위
무배당 멤버원거치연금보험	종신연금(10년보증, 20보증)형 [정액, 체증(5.10%)]	개인연금형, 부부연금형
	확정연금형 [7.10.15.20년형]	개인연금형
	상속연금형	개인연금형

### 2. 보험료 납입기간, 연금지급개시나이, 보험기간

보험료 납입기간	연금지급개시나이	보험기간
일시납	45 ~ 70세 (단,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 ~ 80세)	◎ 종신 -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-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(단,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)

단,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 후 3년 이후에 한함.

또한,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.

### 3. 가입나이

15세 ~ (연금지급개시나이-3)세

### 4. 보험료 납입주기

일시납

### 5. 납입보험료 한도

기본보험료 : 100만원 ~ 50억원

추가납입보험료 : 기본보험료의 200% 이내로 함.

### 6. 배당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.

### 7.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일시납보험료의 100%로 함.

## 8.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

가.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「공시이율」로 한다.

나. 공시이율은 매일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.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%~120%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다. 공시기준이율의 산출

-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,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.

공시기준이율 산출식 = (내부지표 + 외부지표) / 2

- 내부지표 산출식 = 
$$\frac{2 \times (I - E)}{A_{12} + A_0 - (I - E)} \times 100$$

- I :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
- E :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
- A :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.  
A<sub>6</sub> :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
A<sub>0</sub> 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- 외부지표 산출식 =  $(B_1 + B_2 + B_3) / 3$

- B<sub>1</sub> 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- B<sub>2</sub> 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- B<sub>3</sub> :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가중이동평균이율 (B<sub>i</sub>) = 
$$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$

B<sub>i</sub>(-3) :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B<sub>i</sub>(-2) :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
B<sub>i</sub>(-1) :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-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(AA-)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-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.
-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 수익률,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.
-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,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.
-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.

라. '나'항 공시이율은 동종상품(나'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)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
- 마.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.
- 바. 공시이율은 보험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 복리 2.5%, 10년 초과시에는 연 복리 2.0%를 최저한도로 적용한다.
- 사.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.
- 아. 3년미만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보험료 납입경과기간	중도해지이율
1년 미만	2.5%
2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80%, 2.5%)
3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90%, 2.5%)

## 9. 기타

- 가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  - (1)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50%를 초과 할 수 없다.
  - (2)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.
  - (3)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액을 인출할 수 없다.
- 나.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「공시이율 + 1.5%」로 하고,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.
- 다.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.
- 라.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- 마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  - (1)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-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, 예정신계약비를 「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“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”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신계약비율 최고한도를 적용한 신계약비」의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.
  - (2)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”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%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(별첨 제 1 호)

##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##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